

「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방음터널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택지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방음터널·시설 설치의 최소화 필요에 따라 통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에는 소음 영향을 적게 받는 용지를 우선 배치하도록 개선하고 일부 조문 정비를 통하여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시·도지사 정의를 법률과 동일하도록 수정(안 제2조제2항)

나. 인용된 지침의 지침명 변경 반영(안 제5조제1항)

다.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에는 소음 영향이 적은 용지가 우선 배치되도록 검토를 의무화 함(안 제11조제3항)

라. ‘개발계획 수립권자’를 ‘지정권자’로 통일(안 제21조제6항)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. 11. 16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
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, 우편번호 30103)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
(전화 044-201-3438, 3450, 팩스 : 044-201-5661)

### 4. 기타

-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·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